

대구광역시 달성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재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96
----------	------

발의연월일 : 2022. 11. 24.

발의의원 : 최재규 의원,
박주용 의원, 이연숙 의원

1. 제안이유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달성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수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군수와 군민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나. 지원계획 및 지원 대상, 범위 (안 제4조~제7조)
- 다. 실태조사, 홍보 및 시행규칙(안 제8조~제10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련 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대구광역시 달성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달성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수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가 정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에 의해 빗물 등이 주택 등에 유입되어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의 차단 목적으로 주택 등에 설치하는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

가. 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풍수해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과 대비를 위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군수가 풍수해 예방 등을 위해 시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으로서 주택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대상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 대상·절차 등) ① 군수는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주택 등의 소유자(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비용 지원 신청한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그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비용 지원을 받는 침수방지시설은 그 현장에 예상되는 침수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규모의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신청의 방법·절차, 지원대상자 결정 등의 사항은 지원계획 등에 따라 정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지원 범위)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침수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1천만원 이하

제8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 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등) 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등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군수가 매월 발행하는 소식지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풍수해”(風水害)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가. 자연재해 원인 조사 및 분석

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관리

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풍수해 예방 및 대비

가. 삭제<2017. 10. 24.>

나. 수방기준 제정·운영

다.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기준 제정·운영

라. 내풍(耐風)설계기준 제정·운영

마. 그 밖에 풍수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3. 설해(雪害)대책

가. 설해 예방대책

나. 각종 제설자재 및 물자 비축

다. 그 밖에 설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4. 낙뢰대책

가. 낙뢰피해 예방대책

나. 각 유관기관 지원·협조 체제 구축

다. 그 밖에 낙뢰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5. 가뭄대책

가.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나. 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 관리·유지

다. 빗물모으기시설을 활용한 가뭄 극복대책

라. 그 밖에 가뭄대책에 필요한 사항

6. 폭염대책

가. 폭염피해 예방대책

나. 폭염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다. 각 유관기관 지원·협조 체제 구축

라.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7. 한파대책

- 가. 한파피해 예방대책
- 나. 한파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 다. 각 유관기관 지원·협조 체제 구축
- 라. 그 밖에 한파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8. 재해정보 및 긴급지원

- 가. 재해 예방 정보체계 구축
- 나. 재해정보 관리·전달 체계 구축
- 다. 재해 대비 긴급지원체계 구축
- 라. 비상대처계획 수립

9. 그 밖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 점검 방법, 점검 결과의 기록·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연재해의 유형별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처 요령을 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업무지침, 주민 교육·홍보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⑥ 국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자연재난의 예방·복구 및 대책에 관한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